

# [집합투자기구 변경 안내]

가. 대상 펀드 : 교보약사 안정 3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변경전 펀드명 : 교보약사 리츠인프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나. 변경 시행일 : 2018년 5월 2일

다. 변경 내용 :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시행령 제24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미 설정된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
- 투자신탁 명칭 및 모자구조 변경에 따른 운용전략 변경
- 운용보수, 신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 운용전문인력 변경
- 모자형 구조로의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기재사항 반영

## [집합투자계약]

구분	정정전	정정후
펀드명	교보약사 리츠인프라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교보약사 안정 30 증권투자신탁 1 호 [채권혼합]
제 2 조(용어의 정의)	1.~ 7. 생략 신설  신설  8. 내용생략	1.~ 7. 현행과 같음 <b>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b> <b>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b> 10. 내용 현행과 같음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교보약사 공모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이라 한다. ② 생략 1.~5.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신설	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 <b>교보약사 안정 3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b> ’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b>6. 모자형(자투자신탁)</b> ③~④ 현행과 같음 <b>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 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b> 1. 교보약사 공모주알파30증권모투자신탁

	신설	<b>탁[채권혼합]</b> <b>⑥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b>
제 16 조(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u>채권</u> 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되, 주식에도 일정수준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u>주로 채권에 투자하면서 일정수준을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u>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 자산 등)	① 내용 기재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b>1. 제 3 조제 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모투자신탁</b> <b>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b>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 18 조(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내용 기재 생략	<b>1. 제17조제1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b> <b>2. 제17조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b>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내용 기재 생략	<b>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b>

		<p><u>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u>  <u>나.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  <b>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p>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①~③ 생략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①~③ 현행과 같음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u>동 의 와 이 투자 신탁 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 의 를 얻은 경우에는</u>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제 28 조(환매연기)	<p>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② ~⑦ 생략</p>	<p>①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u>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u>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②~⑦ 현행과 같음</p>
제 37 조(수익자총회)	<p>①~⑧ 생략  신설</p>	<p>①~⑧ 현행과 같음  ⑨ <u>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 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제 39 조(보수)	<p>①~③ 생략  1. Class A 집합투자증권</p>	<p>①~③ 현행과 같음  1. Class A 집합투자증권</p>

	<p>2. Class C 집합투자증권  3. Class C-E 집합투자증권  4. Class C-I 집합투자증권  5. Class C-W 집합투자증권  6. Class C-F 집합투자증권  7. Class S 집합투자증권  8. Class C-P 집합투자증권  9. Class C-P2 집합투자증권  10. Class S-P 수익증권  11. Class CG 수익증권  12. Class Ae 수익증권  13. Class C-Pe 수익증권  14. Class C-P2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p> <p>나. 생략</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2. Class C 집합투자증권  3. Class C-E 집합투자증권  4. Class C-I 집합투자증권  5. Class C-W 집합투자증권  6. Class C-F 집합투자증권  7. Class S 집합투자증권  8. Class C-P 집합투자증권  9. Class C-P2 집합투자증권  10. Class S-P 수익증권  11. Class CG 수익증권  12. Class Ae 수익증권  13. Class C-Pe 수익증권  14. Class C-P2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b>2.6</b></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b>0.1</b></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b>0.1</b></p>
<p>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①~④ 생략</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b>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b>)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b>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b>)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p>

	⑦~⑫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⑦~⑫ 현행과 같음
--	--------	----------------------------

###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투자신탁 명칭 변경	교보약사 리츠인프라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b>교보약사 안정30증권자투자신탁 1호 [채권혼합]</b>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모자형 내용 추가 기재	마. 특수형태 <b>모자형(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b>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 추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김태현	홍기석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신설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b>모자형</b>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b>다른 자투자신탁 기재 및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b>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채권(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 등에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리츠/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IPO 및 SPAC관련 주식에 40%이하로 투자하며, 기타 단기 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b>채권에 투자하면서 일정수준을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b> 에 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p>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 및 한도</p> <table border="1" data-bbox="464 235 933 331"> <tr> <td>채권</td> <td>60% 이상</td> </tr> <tr> <td>주식</td> <td>30% 미만</td> </tr> </table>	채권	60% 이상	주식	30% 미만	<p>가. 투자대상 및 한도</p> <table border="1" data-bbox="962 235 1436 376"> <tr> <td>모투자신탁</td> <td>90% 이상</td> <td>교보약사 공모주알파 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td> </tr> </table> <p>-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기재</p> <p>나. 투자 제한</p> <p>- 투자 제한 변경</p> <p>-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기재</p>	모투자신탁	90% 이상	교보약사 공모주알파 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채권	60% 이상								
주식	30% 미만								
모투자신탁	90% 이상	교보약사 공모주알파 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p>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p>	<p>가. 투자전략</p> <p>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채권(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등에 자산총액의60%이상을 투자하고 리츠/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IPO 및 SPAC관련 주식에 40%이하로 투자하며,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①채권 운용전략 : 안정적인 수익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에 주로 투자하되, 투자대상 채권 평균 만기를 6~24개월 수준으로 운용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p> <p>②주식 운용전략 : 주식에의 투자는 리츠/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IPO 및 SPAC관련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모주에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상장 후 1년 이내의 주식에도 투자함으로써 추가매매이익을 추구합니다.</p>	<p>가. 투자전략</p> <p><b>(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b></p> <p><b>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교보약사 공모주알파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b></p> <p><b>(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교보약사 공모주알파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전략</b></p> <p>-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공모주 위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투자하여 자본 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합니다.</p> <p>• 채권 운용전략</p> <p>안정적인 수익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 및 채권ETF에 주로 투자하되, 투자대상 채권 평균 만기를 6~24개월 수준으로 운용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p> <p>• 기타 주식 운용전략</p> <p>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모 증자 주식, 신규 기업공개 주식(기업인수목적 회사의 기업공개 주식포함), 공모 후 1년 이내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업분</p>							

	- 이하 생략 -	<u>할, 합병, 자사주 장외매각 등 회사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차익거래성 투자기회 발생시 투자할 계획입니다.</u> - 이하 생략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리츠 및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위험 : 리츠 및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 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 변동위험이 있습니다. 리츠 및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경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 및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4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혼합채권형)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여건 변화와 증권의 가격변동에 대한 상관관계, 증권의 투자위험,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u>자산총액의 70% 이상을 국내 채권등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u> 투자하는 증권(혼합채권형)자집합투자기구로서,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여, 국내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 및 채권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 및 채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각 클래스별 보수 - 집합투자업자보수 : 0.35% - 판매회사보수 : 기재생략 - 신탁업자보수 : 0.01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15% - 총보수·비용 : 기재생략	<u>각 클래스별 보수 인하</u> <u>- 집합투자업자보수 : 0.26%</u> <u>- 판매회사보수 : 기재생략</u> <u>- 신탁업자보수 : 0.01%</u> <u>-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1%</u> <u>- 총보수·비용 : 기재생략</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내용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내용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내용 생략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내용 생략
--	-------	------------------------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투자신탁 명칭 변경	교보약사 리츠인프라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b>교보약사 안정30증권자투자신탁 1호</b> <b>[채권혼합]</b>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채권(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 등에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리츠/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IPO 및 SPAC 관련 주식에 40%이하로 투자하며,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채권 및 채권 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고, 30%이하를 주식(공모주위주)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u>모자형</u>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보수	-	운용등 보수 인하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채권(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 등에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리츠/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IPO 및 SPAC관련 주식에 40%이하로 투자하며,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b>채권에 투자하면서 일정수준을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b> 에 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채권(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등에 자산총액의60%이상을 투자하고 리츠/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IPO 및 SPAC관련 주식에 40%이하로 투자하며, 기타 단기대	<b>(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b> <b>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교보약사 공모주알파30증권모투자신탁 [채권혼합]'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b>



	<p>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 운용전략 : 안정적인 수익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에 주로 투자하되, 투자대상 채권 평균 만기를 6~24개월 수준으로 운용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li> <li>• 기타 주식 운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츠/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모 증자 주식, 신규 기업공개 주식(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 주식포함), 공모 후 1년 이내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업분할, 합병, 자사주 장외매각 등 회사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차익거래성 투자기회 발생시 투자할 계획입니다.</li> <li>- 리츠 및 부동산 투자회사는 안정성이 높고 시가배당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li> <li>- 기업공모에 선별적인 참여를 통한 물량 확보 및 상장 후 시초가 매도가 기본전략이나,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탄력적인 대처를 통하여 물량 확보 전략과 보유기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li> </ul> </li> </ul>	<p><b>(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교보약사 공모주알파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공모주 위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투자하여 자본 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합니다.</li> <li>• 채권 운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인 수익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내 국공채, 우량 공사채/은행채(AAA 이상) 및 채권ETF에 주로 투자하되, 투자대상 채권 평균 만기를 6~24개월 수준으로 운용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li> </ul> </li> <li>• 기타 주식 운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모 증자 주식, 신규 기업공개 주식(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 주식포함), 공모 후 1년 이내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업분할, 합병, 자사주 장외매각 등 회사의 특수상황으로 인한 차익거래성 투자기회 발생시 투자할 계획입니다.</li> <li>- 주식에의 투자는 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공모 증자 주식, 신규 기업공개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모주에의 투자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상장 후 1년 이내의 주식에도 투자함으로써 추가매매이익을 추구합니다.</li> </ul> </li> <li>- 이하 생략 -</li> </ul>
<p>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p> <p>(1) 투자전략</p> <p>3. 운용전문인력</p>	<p>김태현</p>	<p>홍기석</p>
<p>II. 집합투자기구의 투</p>	<p>리츠 및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의</p>	<p>삭제</p>

<p>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p>	<p>가격변동위험 : 리츠 및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 변동위험이 있습니다. 리츠 및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경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 정되므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 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 및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p> <p>신설</p>	<p>공모주투자위험 등 추가</p>
<p>Ⅱ.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투자위험 등급 분류</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4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혼 합채권형)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 내의 경제여건 변화와 증권의 가격변 동에 대한 상관관계, 증권의 투자위험,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 다.</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u>자산총액의 70% 이상을 국내 채권등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에</u> 투자하는 증권(혼합채권형)자집 합투자기구로서,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 는 채권형 투자신탁보다 훨씬 높은 위 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여, 국내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 및 채권의 가격 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 및 채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 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